

영등포구의회
제21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장순원 의원 발의】



2019. 9. 27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154호로 2019년 9월 19일 장순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·절차·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“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”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,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(안 제5조)

라.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외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포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. ~ 9. 16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‘착한가격업소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2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,

-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, , ‘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’ 지정 운영 등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표지판 교부, 종량제봉투 지원, 소모품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,
 -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, 본 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우리구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

이며, 향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자 물가 안정
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
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